

#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2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이유

-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위원회 위원 수와 위원장의 직급을 조정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위원수를 12인에서 8인으로 함 (제5조 제2항)
- 위원장 행정부지사를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위원장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함 (제5조 제3항)
- 기금운용관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 사회복지과장을 재할복지담당사무관으로 함(제11조 제1항)

3. 의안전문 : 별첨

4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 : 별첨

##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(인)

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2항중 “12인”을 “8인”으로하고, 동조 제3항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사회복지과장”으로 하고 동조제3항 1목을 삭제하고, “2목”을 “1목”으로 “3목”을 “2목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제1항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사회복지과장”으로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재활복지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5조(위원회 구성) ①(생략)          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         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</p> <p>2. 장애인복지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p> <p>3. 장애인복지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자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5조(위원회 구성) ①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          ③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(삭제)</p> <p>1. 장애인복지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p> <p>2. 장애인복지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자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기금 관리공무원)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복지환경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.</p> <p>② ~③ (생략)</p>	<p>제11조(기금 관리공무원)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활복지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</p> <p>② ~③ (현행과 같음)</p>